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민지 소유물건(2025타경100855)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법보좌관
김재철

감정평가서번호: HM2503-12-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임 C&A 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양 형 찬

감정평가액	일억구천이백만원정 (₩192,00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법보좌관 김재철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민지 (2025타경100855)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3.21	2025.03.19 ~ 2025.03.21	2025.03.2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92,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92,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건물(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 제16층 제1608호)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경매목적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 조건

없음.

4. 실지조사 기간 및 기준시점

1) 실지조사 기간

본건 실지조사는 2025년 03월 19일~03월 21일에 실시하여,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반 사항을 조사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03월 21일임.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법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① 감정평가방법

■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식(방법)에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및 적산법 등),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원가방식에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사용료를 포함)를 산정하는 '적산법' 등이 있음.

■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실증적인 교환측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비교방식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임대료)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음.

■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수요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수익방식에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② 감정평가방법

-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를 일괄로 감정평가함에 있어,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

6.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위치 및 내부 확인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등에 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1. 감정평가 대상물건

1) 건물 개요

소재지	주구조 및 지붕	주용도	연면적 (㎡)	규모	사용승인 일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업무시설(오피스텔)	33,393.34	지하4층/지상24층	2020.07.30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기준

2) 대상물건 개요

일련 번호	동/호수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 (㎡)	대지권 면적 (㎡)	용도
가	제103동/ 제1608호	27.73	39.43	67.16	7.115	업무시설 (오피스텔)

※. 공용면적: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의 구분 (췌)의 면적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1. 개요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반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건물의 구조,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관리상태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인근지역 내 동유형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괄로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2. 비교사례의 선정

1) 비교사례의 선정기준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등.

2)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 일 자
1	안양동 433-2	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제201*호	29.37	210,000,000	7,150,153	2023.06.26	2020.07.30
2	안양동 433-2	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제110*호	29.37	200,000,000	6,809,669	2024.03.24	2020.07.30
3	안양동 433-2	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제60*호	27.73	190,000,000	6,851,785	2024.09.02	2020.07.30

3)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정보체계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전유면적 (㎡)	평가목적	전유면적당 단가(원/㎡)	기준시점	사용승인 일자
#1	안양동 433-2	안양센트럴 헤센	제103동/제211*호	29.37	공매(국세,지방세)	7,082,057	2024.06.04	2020.07.30

4)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구분	가격수준	비고
인근 유사 부동산	전유면적당 @6,500,000원/㎡~ @7,500,000원/㎡내외 수준임	실거래가 자료 및 현장조사 등

5)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통계 분석

[출처: 부동산태인]

물건용도	안양시 만안구		기간	비고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아파트	86.53	85.96	최근 1년	44
다세대	73.96	73.77		78
오피스텔	74.16	76.32		46

6)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참고가격자료 중 비교사례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과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3)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함.

결정의견	본건 인근 및 유사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시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사정보정치	1.000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비교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건 구분건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월간동향 중 해당물건의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시점	매매가격지수	시점수정치의 산출
거래시점 [2024.09.02.]	98.58[적용: 2024.08월]	$97.84/98.58 \approx 0.99249$ (경기도 오피스텔)
기준시점 [2025.03.21.]	97.84[적용: 2025.02월]	

5. 가치형성요인 비교

1) 가치형성요인

가치형성요인	
항목	세부항목
단지외부요인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생산자서비스 종사자 밀도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등
단지내부요인	건물의 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정도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 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환가성, 안정성 등)

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분	단지 외부요인	단지 내부요인	호별 요인	기타 요인	가치형성요인
가	1.00	1.00	1.02	1.00	1.020

결정의견

본건은 비교사례 3 대비 호별요인(층별효용 등)에서 우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

1) 산식

비준가액=사례가격×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

2) 산출가액

구분	비교사례 전유면적당 단가(원/m ²)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산출단가 (원/m ²)
가	6,851,785	1.00	0.99249	1.020	6,936,335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구분	전유면적 (m ²)	산출단가 (원/m ²)	산출가액 (원/호)	감정평가액 (원/호)
	동/호수				
가	제103동/ 제1608호	27.73	6,936,335	192,344,570	192,000,000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비준가액을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동향, 평가사례 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구분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	감정평가액 (원/호)	비고
가	제103동/ 제1608호	27.73	7.115	192,000,000	비준가액
합계				192,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4	433-2 안양센트 럴헤센 제103동	업무시설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1층	216.72		
					2	946.12		
					3	946.12		
					4	946.12		
					5	946.12		
					6	946.12		
					7	946.12		
					8	946.12		
					9	946.12		
					10	946.12		
					11	946.12		
					12	946.12		
					13	946.12		
					14	946.12		
					15	946.12		
					16	946.12		
					17	946.12		
					18	946.12		
					19	946.12		
					20	946.12		
					21	946.12		
					22	946.12		
					23	946.12		
24	946.12							
	동소	433-2	대	일반상업지역	6,611.7			
	동소	433-2 위지상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6층 제1608호	27.73	27.73	192,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 소유권	7.115			
				----- 대지권	6,611.7	7.115		
						토지·건물 토 지 :	배분내역 57,6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의 사정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의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건물 내 제16층 제1608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인근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1류(폭 35m~40m)(2019-01-25)(접함), 소로1류(폭 10m~12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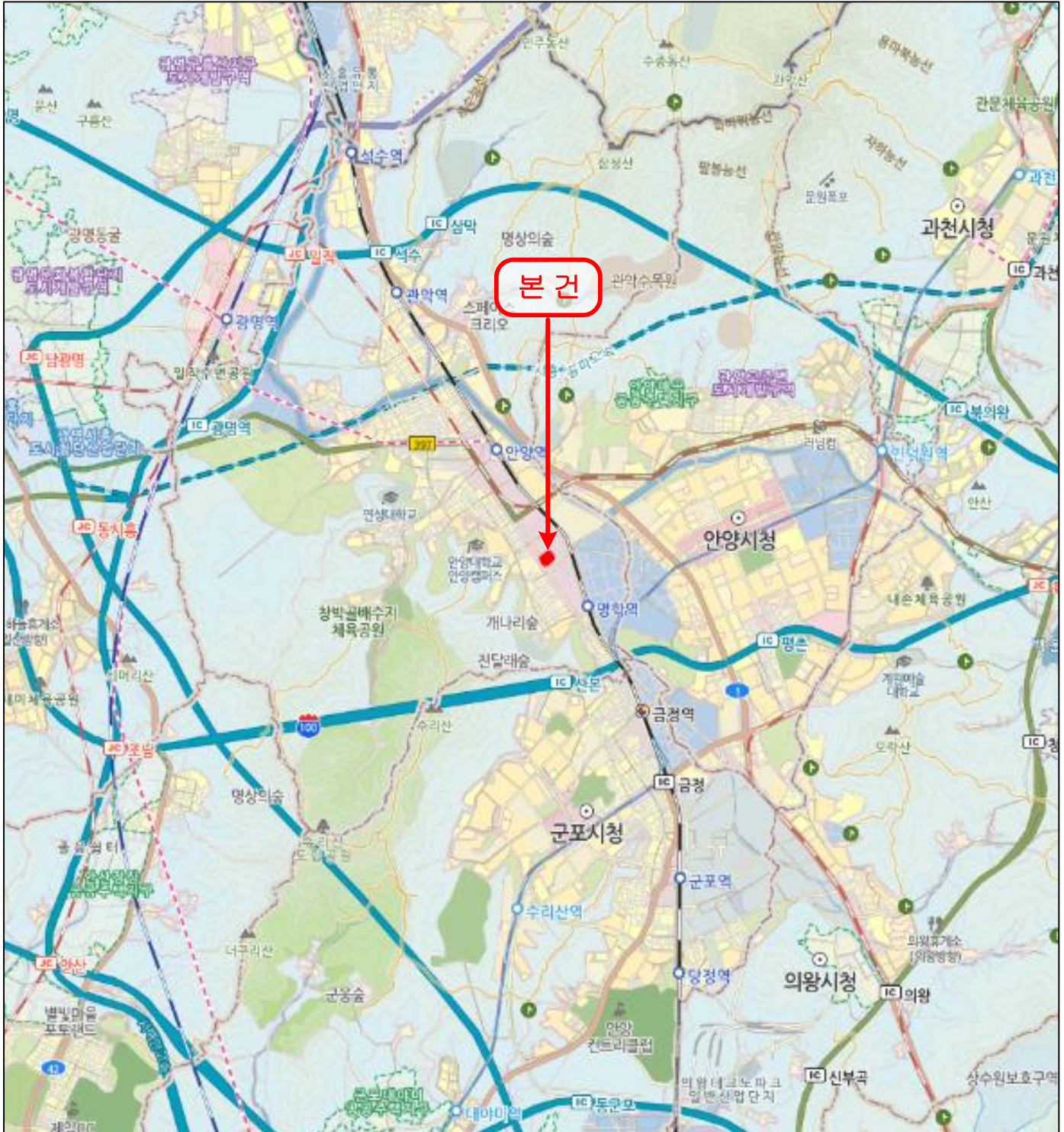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2 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 제16층 제1608호
-----	---



상세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2 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 제16층 제1608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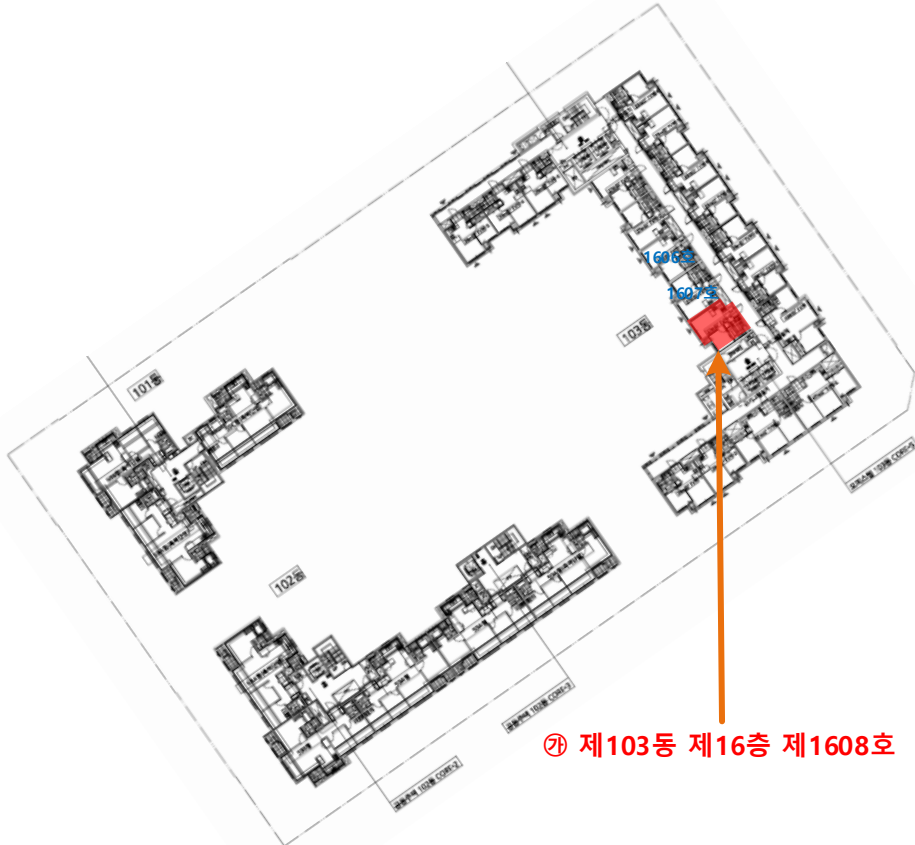


호 별 배 치 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2 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 제16층 제16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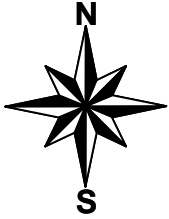
NO SCALE



㉔ 제103동 제16층 제1608호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3-2 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 제16층 제1608호

NO SCALE



[내부구조도]



[]



[]



[]



[]

